



# 대한민국 헌법 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에 대한 고찰

김, 훈호

---

(Issue Date)

2025-01-31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uthor's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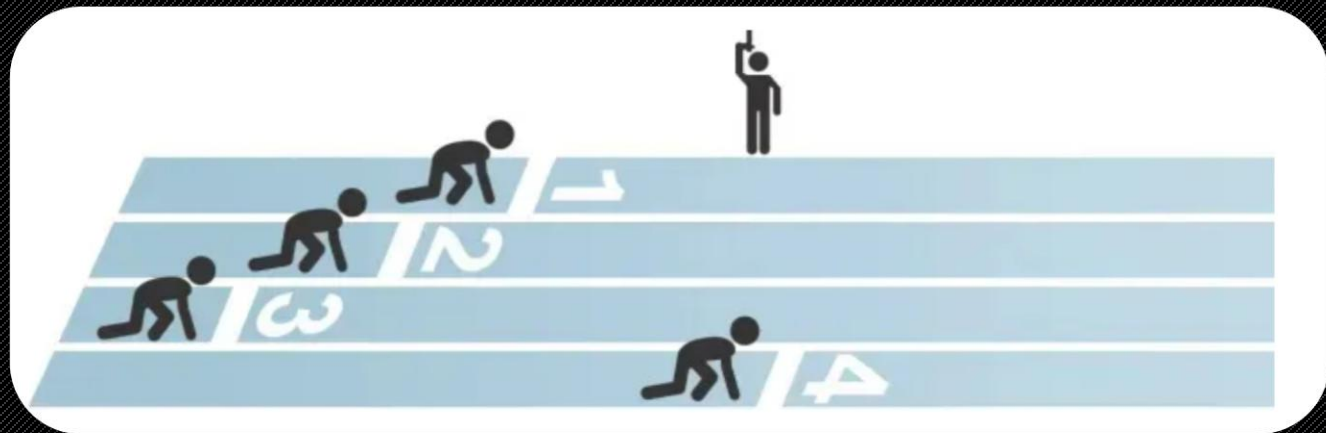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2929>



# 대한민국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김훈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 CONTENTS

---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02.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의 관계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01

## 헌법 상

### 「교육을 받을 권리」

---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국민의 보통교육 의무에 대해 규정

- ▶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제정 (상해 임시정부 후반기)

### 제1장 총칙

二.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중략) 이는 사회 각 계급·계층이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를 균평(均平)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니... (중략)

### 제3장 건국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은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 지력(智力) 중에서 **학력(學力)과 교육의 권(教育의 權)**을 균등히 할 것을 천명

✓ 개인에게 **수교육권(受教育權)**과 **학습권(學習權)**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의 의무** 부과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4.22., 폐지제정)

###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열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급 신앙의 자유
2. 거주, 여행급 통신, 비밀의 자유
3. 법률에 의하여 취학(就學), 취직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이하 생략)

→ 취학(就學)을 요구할 권리 규정 → 국가에 대한 교육청구권 명문화

✓ 1940년대에 이미 교육에 대해 “권리”라는 인식을 정립하였음

✓ 취학을 요구하고 비용을 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식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 1948년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 교육을 “권리”의 관점에서 조명

- ✓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서는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의식보다 정치적 자유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자유”가 부각되었음(박혜영, 2023)
- ✓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 → 교육을 “자유”의 관점이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명확히 규정
- ✓ 제헌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진오는 제16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제16조에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을 오로지 자유라고 해서 국가권력으로써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만, 우리 헌법에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아니하고,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임을 밝히는 동시에, 특별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초등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하에 두고, 교육제도를 법률로써 정하는 이런 체제를 취해 본 것이올시다.” (국회 회의록, 『제1대 국회 제1회 제17차 국회본회의(1948.06.23.)』)

- 유진오(1954)의 『헌법해의』 p.81에서 재인용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 1962년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개의 항에서 5개의 항으로 세분화 &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추가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능력” 개념 추가 (← 일본헌법 제26조 제1항 영향)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신헌법이 신설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국민이 재능 여하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오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능력**이란 **재능 기타 일신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재력, 기타 비전속적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 박일경 헌법심의회위원회 전문위원 진술(1962; 정필운, 2017:10에서 재인용)

- 능력(수학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한 것 (헌법재판소 2000.4.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1987년(현행)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

▶ 1987년(현행)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01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

##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기능

###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권리 혹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기본권)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생존권적) 기본권)로 구성”된다고 보았음 (헌재 2008.4.24., 2007헌마1456, 판례집 20-1상, 720, 731)

### ✓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 1994.2.24., 93헌마192)

- ① 인간다운 생활 보장: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②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 촉진
- ③ 민주주의 원리의 확립: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 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
- ④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실현: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 직업생활과 경제생활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이념 실현

02

#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의 관계

---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교육기본법 [법률 제20562호, 2024.12.20., 일부개정 / 1997년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3조(학습권) 내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

Q. 교육을 받을 권리 = 학습권 ? (← 헌법 제31조 제1항 근거 / 판례에서는 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 동일하게 판단)  
or 교육을 받을 권리 ⊂ 학습권(또는 교육기본권) ? (← 헌법 제10조 근거)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개념으로 보는 설

- ✓ 헌법에 대한 문리적 해석(文理解釋)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교육을 시킬 권리)’로 대비  
→ 학습권(學習權)을 ‘교육을 받을 권리’ vs. ‘교육을 할 권리(=교육을 시킬 권리)’를 교육권(教育權)으로 파악
- ✓ 한계 및 비판
  - 다만, ① ‘교육을 할 권리(=교육을 시킬 권리)’를 교육권으로 볼 때 교육권의 개념에 부모(양육자)와 교사, 관계 당국 등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와 권한이 모두 포함되어 그들의 권리와 권한의 성격 및 관계를 구조화 하기 어려움,
  - ② ‘교육을 시킬 권리’나 ‘교육을 할 권리’는 교사나 부모(양육자)의 권리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나 ‘배우는 일’은 학생의 권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교사는 교육을, 학생은 학습을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02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상 「학습권」의 관계

### ❖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의 일부”로 보는 설

- ✓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역사상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기본권의 체계에서 볼 때 생존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권의 일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는 견해
  -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서 도출된 “인권”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만 해석될 수 없음
  - 학습권은 3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①생존권적 측면, 제37조 제1항에서의 ②자유권적 측면과 ③정치권적 측면  
→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습권”이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의 생존권적 측면을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해석 (허종렬, 2018)
  - 헌법 제10조에 인간적인 성장·발달에 대한 생래적 권리로서 “학습의 자유”가 인정됨 → 근대헌법에서 인정되던 학습의 자유가 현대헌법으로 오면서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 변화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로 되었음 (노기호, 2008)
  - 요컨대, 헌법 제10조에서 “학습권”의 근거를 찾고, 그 성격의 일부 또는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생존권성을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는 견해 (고전, 2018)
- ✓ **한계 및 비판**
  - “학습권”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실현 수단으로 “교육”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 다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권”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 (박혜영, 2023)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권의 일부”로 보는 설

- ✓ 교육권과 관련된 권리의무 주체를 기준으로 “교육권”이란 광의의 개념 속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 ✓ 다양한 견해
  - 첫째,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교사, 부모(양육자), 학교설립자의 교육권도 인간의 기본권으로 교육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안기성, 1988)
  - 둘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문화적 내용으로 학생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의 보장이 포함되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설치자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 모든 교육권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보는 견해 (강인수, 1994)
  - 셋째, 교육권을 ‘교육시킬 권리’ 내지 ‘교육의 자유’로만 해석하는 것은 ‘받을 권리’와 ‘시킬 권리’를 대응시킨 형식적인 문리해석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권은 ‘교육시킬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분류되고, 주체에 따라 학생의 교육권, 부모(후견인)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교육권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견해 (표시열, 1996)
- ✓ 한계 및 비판
  -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권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개념을 교육권이라는 개념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게 되며, 교육에 대한 기존 인식의 영향으로 그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교육권 개념이 마치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모아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음
  - 각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의 성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주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의 구별이 어렵게 됨 → 학자마다 교육권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념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권한을 더 분명하지 못하게 만들었음 (홍석노, 2014)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기본권”으로 보는 설

- ✓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받을’ 권리와 ‘시킬’ 권리라는 문리적 해석에서 벗어나, **교육**은 “헌법 전체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기본권** 즉, **인권**이기에 단순히 고립된 한 개의 조문으로 파악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
  - 교육권을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이해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인 권리 또는 권한”으로 이해
  - “**학습권**”과 “**교육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자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줄 기준으로 “**교육기본권**” 개념 사용
  -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개인의 **성장·발달에 대한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천부인권 중 하나**로 보았음 (→ 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헌법 제31조를 해석) (신현직, 1990)
- ✓ **한계 및 비판**
  - “교육기본권”이 교육의 개념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학문의 자유 등과 함께 종합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은 인정 → 다만, **실정 헌법상의 관련 조문의 편제에 따라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표시열, 1996)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

✓ “교육을 받을 권리”와 “수학권(修學權)”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음

- 수학권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로서 헌법 제10조 전문과 헌법 제3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음을 판시하였음
- 제31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평생교육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의 법률적 보장”,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 지위 법률주의” 등은 제1항의 국민의 수학권의 차질 없는 실현과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하 “수학권” (修學權)이라 약칭한다)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판례집4, p.739, pp.750-751)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

#### ✓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學習權)”으로도 보았음

-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修學權)” 또는 “학습권(學習權)”으로 판시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教育)을 받을 권리(權利))와 교사(教師)의 수업(授業)의 자유(自由)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6.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는 자는 물론 교육을 하는 자도 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국민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授業)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나 국민의 학습권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6).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판례집 12-1, 477.

#### ✓ 한계 및 비판

-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의미 내용을 풀어보면 “수학권”의 보장은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 But, “학습권”은 학습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적인 성장·발달권으로 이해
- 따라서 “학습권” 개념이 “수학권”의 개념보다 넓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종근, 2012) → 학습권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박혜영, 2023)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헌법재판소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 또는 “학습권”과 동일시하는 이유 (허종렬, 2018)

✓ 헌법학계 권영성교수가 일본 헌법학계의 학설을 근거로 헌법 제31조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한 것에 기인

- 일본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修學權)이라고 하면서, 공민권성, 생존권성, 학습권성 등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봄 (室井 力(1978: 45). 教育法の基礎. 青林書院新社.: 허종렬, 2018: 235에서 재인용)

- 그러나 일본 헌법학계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 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학습권을 오히려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기본권 보장 체계가 일본헌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헌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 및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음 (허종렬, 2006) → 때문에, 일본에서는 학습권의 생존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자유권적 측면과 정치권적 측면 모두 일본헌법 제26조에서 도출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종합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 해석
- 반면, 대한민국헌법은 학습권의 생존권적 측면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1항에서 도출하되, 학습권의 또 다른 측면인 자유권성과 정치권성은 제31조 1항이 아니라 제10조 및 제37조 1항조에 근거하여 도출 가능 →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이며, 자유권적 혹은 정치권적 성격을 갖는 학습권은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 상의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서 도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02 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상 「학습권」의 관계

❖ 헌법재판소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 또는 “학습권”과 동일시하는 이유 (허종렬, 2018)

### ✓ 남은 과제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법론에 바탕을 둔 “학습권”과 달리, 역사상 교육이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넘어가던 과정에서 **국법 및 국가 성립 이후 공교육을 해야하는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생존권적 차원”에서 인정된 것 → 대한민국헌법 상 기본권 체계에서도 **생존권 영역에 “교육을 받을 권리” 편제**
- 적어도 대한민국헌법 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성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하며, 자유권성 혹은 정치권성을 인정할 것은 아님 → **생존권성과 자유권성, 정치권성을 갖는 것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학습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적 인권인 “학습권”을 여전히 헌법 제37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점임
- 학습을 강조하는 **평생학습체제의 흐름**이나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이미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헌법에 “학습권” 반영 필요 → 허종렬(2018) 등은 한국헌법학회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18)에 이를 반영



03

**「교육을 받을 권리」  
재해석의 필요성  
및 방향**

---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의미

- ✓ 국민 각자가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며,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 (김철수, 2013)
  - 학생(학습자)이 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며, 인격을 완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학습권”의 중심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 (안주열, 2005)
  - 교육기본법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의미

-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성에 대해 헌법의 이념이자 기본원리로 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 (김대환, 2010)
  -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의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헌법 제10조를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으로 인정
- ✓ 학생(학습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인격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파생됨 (2008헌마635, 2003헌가1 등)
  - 인격권이란 “인간으로서의 품격, 자아, 정체성, 명예 등이 존중받을 권리” → 인격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은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취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됨 → 읽고, 듣고, 이해하여 알아가는 것 필요
  - 지식의 습득을 통해 깨우치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행복의 상태를 가져오므로 “행복추구권”과도 관련 (김철수, 2013) → 인격권과 인격형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로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로 볼 수 있음
  - 학생(학습자)의 인간다운 성장·발달의 보장에 관련되는 교육 특유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기타의 모든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인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권 중의 인권 (박인희, 1981)
  - 아울러,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볼 때, “자기 학습”까지도 포함하는 권리 → 학생은 학습에 의해 인간답게 성장하고 발달해 갈 권리가 있음 →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련 당사자인 학생(학습자)은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인격(형성)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의 의미

##### ✓ “학습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 가능

-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명시적인 문언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헌법 규정 또는 헌법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2010헌마341(병합), 판례집 23-1, 416.

- ✓ 기본권 보장에 있어 헌법 제10조를 일반규정으로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한 노력
- 헌법의 조문만으로는 다양한 기본권 관계를 모두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김대환, 2009)
- 요컨대, 헌법 제37조 제1항과 제10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을 함에 있어, 학생(학습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함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1조 제1항과 제10조의 관계

### ✓ 교육과 관련한 헌법핵(憲法核)으로서의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학습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10조가 주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

### ✓ 다만, 학습자의 성장발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 (박혜영, 2023)

- 학생은 헌법적 인간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아직 자신의 인격을 성장·발달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받을”이라는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후 성장·발달할 능력이 향상될수록 “받을”보다 “권리”에 방점을 두는 해석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
- 요컨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관계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당사자인 학생(학습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인격을 성장·발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더 중점을 두면 헌법 제10조가, ‘교육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한 존재’에 중점을 두면 헌법 제31조 제1항이 근거 규범이 되는 것임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개정 논의
  - ✓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학습권" 또는 "학습의 자유"라는 권리 또는 자유를 개헌안에 반영 하자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합의
  - ✓ 다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 또는 "학습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허종렬)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두되, 보다 상위의 권리인 학습권 신설  
이유①: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와 학계의 학설로 이미 국민들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진 기본권은 그대로 유지해갈 필요  
이유②: "**학습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권적, 정치권적, 생존권적 성격을 구유하는 "학습권"을 선택함으로써 그 의미를 온전히 구현
    - (고전, 김용, 송병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또는 "학습의 자유"로 전환하자는 입장
    - (황준성, 이덕난)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자유권으로서의 "학습의 자유"라고 하는 규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
    - (황홍규) "학습자로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누릴 권리"라는 절충적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개정 논의

##### ✓ "적성"을 추가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

- "능력"만을 강조할 경우 **학력 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이 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성"에 따른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기'의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자는 교육적 의미

##### ✓ 다만, "능력"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존재

- (사회적교육위원회) "능력"이 오히려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능력"을 삭제하자고 제안

헌법 제31조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능력" 부분을 삭제하여 기회 균등만 남겨 놓음으로써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함.

- 사회적교육위원회 기자회견문(2018.3.6.)

- (허종렬) "능력"은 어느 정도 학습자의 능력의 차등에 따른 교육기회 부여의 차별 사유로 간주되나, **"능력" 이외에 차별적 취급을 급한다는 의미**로, 현행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서 여전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조석훈) 헌법 31조 제1항은 **개인별 능력의 다양성을 전제로 각자의 독특한 능력에 적합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자는 의미를 함께 내포 → **"능력주의" 관점과 "평등주의" 관점 모두 포함**

## 0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해석 필요성 및 방향

### ❖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개정 논의

####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정안(2018)

- (개정안)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의의)
  - ① 교육을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이 가진 교육기본권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고, 교육은 교사의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기술이 "학습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음
  - ② 자유권 행사의 실질적 조건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교육에 관해서는 외국인(특히,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자국민과 동등한 교육기본권을 누리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 ✓ 한국헌법학회 개정안(2018)

- (개정안)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의의)
  - ① 생존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이자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학습권"의 보장을 신설**하고,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능력" 조건에 **"적성"을 추가**하였음
  - ② 다만, 사회권 보장의 경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을 납세의무를 진 국민이 아닌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류**



04

# 참고문헌



### ❖ 논문 및 도서

- ✓ 강인수(1994).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6, 117-140.
- ✓ 고전(2018). 교육관련 헌법조항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포럼” 자료집, 51-57.
- ✓ 고전(2018).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1-27.
- ✓ 권영성(1988).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대환(2009).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세계헌법연구, 15(3), 23-58.
- ✓ 김대환(2010).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3), 27-78.
- ✓ 김 용(2018).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포럼” 자료집, 63-66.
- ✓ 노기호(2008).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법학, 24(4), 9-36.
- ✓ 박혜영(2023).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35(1), 63-96.
- ✓ 사회적교육위원회(2018.03.06.).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헌법에 보장하라! ‘교육공공성’과 ‘평등교육’으로! 기자회견문.
- ✓ 송병춘(2018). 헌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포럼” 자료집, 61-62.
- ✓ 신현직(1990).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논문 및 도서

- ✓ 안기성(1988). 헌법과 교육. 교육법학연구, 1, 27-74.
- ✓ 이덕난(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포럼” 자료집, 67-69.
- ✓ 이종근(2012).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47-68.
- ✓ 정필운(2017). 교육헌법에서 교육조항의 개정론: 헌법개정사와 비교헌법론.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교육법학회 공동포럼,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3-24.
- ✓ 정태수(1988). 독자적 교육 법리로서의 교육권론. 교육법학연구, 1, 1-26.
- ✓ 조석훈(2020). 학교와 교육법. 서울: 교육과학사.
- ✓ 표시열(1996).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8, 171-193.
- ✓ 허종렬(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교육법학연구, 30(2), 211-258.
- ✓ 허종렬(2006). 한국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일본헌법과의 비교. 성균관법학, 17(1), 31-65.
- ✓ 허종렬, 엄주희, 박진완(2018).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2018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3, 101-140.
- ✓ 홍석노(2014).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황준성(2017). 교육 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교육법학회 공동포럼,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74-75.

### ❖ 논문 및 도서

- ✓ 황홍규(2018). 헌법의 교육 조항, 실질적 학습권 실현을 지향해야.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59-60.

### ❖ 판례

- ✓ 헌법재판소 1992. 1. 12. 선고, 89헌마88, 판례집 4, 750쪽
- ✓ 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마192. 결정, 판례집 6-1, 177쪽.
-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판례집 11-1, 239쪽.
-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77쪽
-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판례집 15-1, 184쪽.

THANK  
YOU

—

김 훈 호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hoono78@gmail.com](mailto:hoono78@gmail.com) )